

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: 2026년 8월 24일
2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3. 회부일자: 2026년 8월 25일
4. 상정일자: 2026년 9월 2일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II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2. 제안이유

○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명칭을 정비
하고, 지원대상과 위탁대상을 구분하여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
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 명칭 정비(안 제4조)
- 나.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지원 대상과 위탁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, 조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‘근로자의 날’을 ‘노동절’로 명칭을 정비 하였으며, 사업 위탁 대상을 ‘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’으로 확대하였음.
- 다만, 위탁 대상이 확대될 경우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‘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’이라는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향후 관련 부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노동단체 지원 및 사무 위탁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·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V. 토론요지: 생략

VI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VII. 심사결과: 원안가결